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

농림부 축통 51550-56(96.3.5)호로 개정된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에 의거 당 협회의 운영요령 및 특별관리 시행요령이 1996년 제 3, 4차 이사회를 통하여 개정되었다.

제 정 : 1993. 11. 19 (93 5차 이사회)
 1차 개정 : 1994. 9. 29 (94 5차 이사회)
 2차 개정 : 1994. 12. 20 (94 7차 이사회)
 3차 개정 : 1995. 2. 14 (95 1차 이사회)
 4차 개정 : 1995. 9. 27 (95 4차 이사회)
 5차 개정 : 1996. 6. 25 (96 3차 이사회)

1. 목 적

- 1)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이하 SBS 제도라 한다)를 (사)한국육가공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 회원사(END USER) 구매효과의 극대화 (적기구매, 경제적 구매, 안정적 공급)
- 3) 수입우육 유통질서 유지

2. 용어의 정의

- 1) "SBS" 제도라 함은 슈퍼그룹 또는 최종 수요자가 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쇠고기라 함은 HSK 분류표상 0201, 0202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된 것을 말한다.
- 3) 슈퍼그룹(SUPER - GROUP)이라 함은 SBS 제도하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관련 최종 수요자(이하 회원사라 한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최종수요자들의 조직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본 요령에서는 (사)한

국 육가공협회를 말한다.

- 4) 최종수요자(END - USER)라 함은 슈퍼 그룹(이하 육가공협회라 한다)을 통하여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회원사를 말한다.
- 5) 차액금(MARK - UP)이라 함은 SBS 제도를 통하여 쇠고기를 수입한 자가 축산 발전기금을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3. 적용범위

SBS 제도로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배정운동

- 1) 협회 배정량(Sub-Share)

1996년	1996년
7,420M/T	12,491M/T

- 2) 배정대상
(가) 협회 정회원

(나) 신규회원 : 신규 가입회원은 당협회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 취득일 기준 1년후 다음 분기부터 배정대상에 해당된다.

3) 배정방식 및 기준

(가) 연도별 회원사의 배정량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년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단 정부의 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협회는 QUOTA를 분기별로 배정하고 회원사는 분기별 구매물량 범위내에서 그 분기에 수입신청해야 하며 해당분기에 수입신청하지 않은 QUOTA는 회수하여 분기 익월 5일까지 타 회원사에 재배정한다.

(다) 본 운영요령의 제재기준을 위반하여 삭감되거나 배정 중단된 물량은 매년 10월 1일 이전에 협회가 회수하여 타 회원사에 재배정한다.

다만, 위의 (나), (다)항의 재배정은 회원사 중에서 특별관리 시행요령을 철저히 이행한 회원사를 우선하여 재배정한다.

(라) 회원사가 다른 수퍼그룹 소속의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일 경우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회원사는 배정받은 QUOTA를 검역(정밀검역), 통관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말까지 통관될 수 있도록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통관이 해당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만약 다음 각호의 경우로 인하여 당해년도까지 통관되지 않았을 경우 그 물량을 해당 회원사의 익년도 배정물량에서 삭감한다.

(1) 공급자가 선적을 연기하였을 경우.

(2) 회원사가 통관에 필요한 재반 비용을 협회에서 제시한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공급자의 선적서류의 제시기일 지연 또는 서류 및 물품의 이상으로

검역, 통관이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공급자 또는 회원사의 잘못으로 통관이 지연되었을 경우.

4) 용도제한

(가) 햄, 소시지 이와 유사한 가공품의 원료 등과 절단, 성형한 포장육용.

(나) 기타 권장, 제한조치사항

(1) 수입한 상태의 지육으로 판매할 수 없음.

(2) 포장육에는 반드시 자사 브랜드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3) 수출국의 BOX는 사용할 수 없음.

5) 임가공시의 협회보고

(가) SBS 쇠고기를 가공시에는 자체 가공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가공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임가공시의 구비요건

(1) 임가공시 승인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임가공 의뢰사와 임가공사의 임가공계약서(임가공공장 위치도 및 배치도, 저장창고(냉장, 냉동) 면적, 제조품목 및 1일 생산계획 등이 기재된 계약서 및 별도지시 사항)

(3) 임가공 승인 후에는 원료육 입고, 가공품 출고는 당협회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함.

단, 협회는 특정지역을 감안 특정인을 지정하여 입회를 위임할 수 있고 서면 보고케 한다.

(4) 임가공사는 원칙적으로 당협회 회원사(기존사 구비)에게 임가공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수입 및 인도

1) 계약체결

(가) 개별구매 : 회원사(END - USER)와 수출국 공급자간 개별구매 계약체결(협

회에서는 유리한 공급자의 견적을 제시 권유할 수 있다).

- (나) 공동구매 : 회원사 위임시 또는 소량품목의 경제적 구매를 위하여 구매위탁시는 협회 책임하에 공동구매 계약체결.
- (다) 회원사는 수입계약시 박스 등 포장지(부분육 : BOX, 지육 : 마대)에 협회가 지정한 계약 번호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KMIA - 96SL - 00101

협회약칭 연도 회원사 고유번호
 품목 수입신청자수

2) 수입신청

- (가) 회원사는 수입신청서와 구매계약사항(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방법, 선적시기, Packer 등) 및 별지 2호 각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회원사는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협회에 수입신청 하여야 하며 협회는 회원사의 수입신청을 취합, 검토하여 발주마감일 기준 이내 LPMO에 수입추천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추천을 신청한다.

3) 구매발주(수입신청, 수입추천)

협회는 회원사가 전주 토요일까지 협회에 수입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에 수입추천을 의뢰한다(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처리).

4) 물품대 및 수입 제비용 납부

5) 차액금(MARK-UP)납부

- (가) 회원사는 고시된 MARK-UP을 수입추천 신청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축협에서 L/C 개설시에는 각서를 제출하고 물품대(B/L 인수)납부전에 수입금액(CIF+관세)에 양허관세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에 의한 MARK-UP을 곱한 금액을 선적서류(물품대) 결제 이전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환율은 MARK-UP 납입당일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보험료는 $C\&F \times 110\% \times 0.531\%$ 로 산출하고 관세는 $CIF \times$ 관세율로 산출한다.
- (나) 회원사가 타은행에서 L/C 개설시 협회는 MARK-UP 납입에 대한 별지 3호의 은행 각서를 징구한다.

6) 대금정산

협회는 통관 완료후 10일 이내 제비용을 정산한다.

7) 물품인수도

- (가) SBS용 수입최고기는 협회 책임하에 수입 및 통관한다.
- (나) 협회는 통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협회 지정 보관창고(보세창고)에서 회원사 지정창고 문전상차도로 회원사에게 인도한다.

■ 물품대 및 수입 제비용

항 목	금 액	납 부 시 기	납 부 사 항
신용장 개설비 등	수입액(C&F AMOUNT)의 1%	수입신청시	현금(은행보수)
협회수수료	수입액(C&F AMOUNT)의 2.2%	수입신청시	현금(은행보수)
물품대	수입액(C&F AMOUNT)의 25%	수입신청시	현금(은행보수), 은행지급보증
	수입액(C&F AMOUNT)의 75%	수입신청시	상동 또는 견질어음 제출
차액금(MARK - UP)	납입예정액	수입신청시	현금 또는 견질어음 제출
	발생액전액(물품대, 차액금)	B/L 결제일 이전	견질어음결제용현금(은행보수)
관세 및 통관제비용 (창고보관료 포함)	발생액전액	통관예정일 2일전	현금(은행보수)

- (다) 회원사는 클레임 발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를 지연, 거절할 수 없다.
- (라) 인수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회원사가 부담한다.
- (마) 협회공동구매 물량은 협회책임하에 인수도한 후 지정창고에 수송 보관 후 해당 회원사에게 공급한다.

8) 클레임 처리

- (가) 처리당사자 - 실수요자와 공급자
- (나) 공급대상 - 중량부족, 품목 및 품질상이 등 계약내용과 위반된 사항에 따라 구상처리한다.

6. 샘플수입

- 1) 회원사는 분기별 배정물량 중에서 필요한 샘플을 수입할 수 있다.
- 2) 샘플은 3박스(박스당 30kg)/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MARK-UP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사후관리

협회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후관리하며 회원사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협회 직원 및 자을 지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약 20여개사 점검)실시한다.
- 2) 회원사는 별도의 수불일지 및 가공(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가공(작업)일지에는 일별 원료 투입량, 생산(제품, 반제품), 판매, 재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별지서식 4.5호)
단, 위의 별첨한 수불일지와 가공(작업)일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사의 양식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수불일지에는 원료육의 통관일, 입고일, 출고 또는 재고상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3) 사후관리 점검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가) 용도 외 제조가공 및 판매행위 금지.
 - (나) 재고량 파악 및 보관상태 점검.
 - (다) 수불일지 및 가공(작업)일지, 판매(출고)일지 비치(2년간 보존)
 - (라) 수입쇠고기 유통질서를 위한 지도감독.
 - (마) 기타 본 운영요령이 규정한 사항(자을 지도 운영요령제정, 특별관리 시행요령).

8. 협회 수수료 부과

- 1) 협회는 본 지침에서 규정한 업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액(C&F 금액의 2.2%, 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2) 협회 수수료는 수입신청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신청일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9. 장부비치와 공개

협회는 본 지침 운용과 관련된 구매공급 및 정산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다.

10. 제재

본 요령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배정량 축소, 자격정지, 국제청 통보 등 <별표 1>의 제재조치를 위한다.(위반횟수는 첫번째 조치일로부터 1년간 적용)

11. 보고

회원사는 월별수입 및 판매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 익월 2월까지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12. 준용

농림부 제정 수입쇠고기 SBS 운영요령이 본 요령과 함께 준용된다.

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	조 치 기 준		
	1회	2회	3회
1. 운영요령 4-5)조에 의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 참여배제 ◦ 국세청통보
2. 운영요령 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업소 등에 부정유출한 때	◦ 잔량회수 및 3년간 배분중단		
3. 운영요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기록한 때	◦ 경고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4. 운영요령 7조의 명령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5. 운영요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기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	◦ 경고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6. 임가공시의 협회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시	◦ 경고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7. 임가공시 허위로 서면보고 하거나 입출고 입회 거절시	◦ 경고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8. 5-1)조 (다) 목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잔량회수 및 1년간 배분중단	◦ 잔량회수 및 참여배제

임 가 공 승 인 신 청 서

(사) 한국육가공협회장 귀하

* 위탁자

* 수탁자

당사는 귀 협회로부터 인정받은 SBS 수입쇠고기를 수입 위탁 가공 함에 있어 농림수산부 및 협회의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임가공에 따른 운영요령 및 지시를 위반시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첨부와 같이 임가공 승인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임가공계약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위탁자, 수탁자)

199

* 위탁자 :

* 수탁자 :

覺 書

(사)한국육가공협회장 귀하

당사 (END - USER)는 귀협회(SUPER GROUP)로부터 배정받은 SBS 수입쇠고기 도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부 및 귀 협회의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부담과 QUOTA 회수 등의 조치 및 민·형사 사항을 당사(본인)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은 물론 특히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1) 협회로부터 배정받은 QUOTA를 타회사(또는 회원사)와의 양도계획하에 수입쇠고기를 수입통관 후 일정한 대금을 받고 컨테이너 단위 또는 수입한 포장상태로 타회사에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 (2) 협회로부터 배정받은 QOUTA는 수입통관 후 반드시 자사 및 임가공사 공장에서 가공 및 성형 포장하여 수입쇠고기 취급 도·소매점 또는 직매점, 대리점에 판매한다.
 - (3) 속포장 및 겉포장(BOX 등)에 자사 라벨 및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한다.
 - (4) 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
2. 협회자율지도원의 지도 및 지시에 따른다.
3.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차액금, 물품 대 및 제반경비를 기일내에 납부한다.
4. 수입한 물품인수지체 및 거절을 하지 않는다.
5. 3~4항 불이행시 당해 수입쇠고기를 귀협회가 임의로 처분(공매처분 등)하여도 당사는 이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것이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199.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각 서

(사)한국육가공협회 회장 귀하

당행은 귀 협회에서 시행중인 SBS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귀 회원사의 쇠고기 수입량 M/T에 대한 L/C 개설함에 있어서 농림수산부 및 귀 협회의 SBS 수입요령과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 - 45호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발전기금납입 세부 시행요령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들 운영요령 및 시행요령을 위반하여 이에 수반되는 제반 민·형사 사항을 당행이 책임질 것을 서약 각서합니다.

다 음

1. 농림수산부 및 협회의 SBS 수입쇠고기 운영요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45 호와 축협 MARK-UP 을 납입한다.
3. 축협중앙회 MARK-UP 납입세부 시행요령 제 4조 1항 2호 나목에 의거 은행도 약속어음과 은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납입을 유예받은 후 통관전까지 당행에서 납입한다.
4. 본 MARK-UP은 정부에서 정한 특정기금으로서 일반 약정에 통용되지 않으며 '3항'에 준하여 납부한다.
5. L/C 개설한 당행은 B/L을 반드시 한국육가공협회에 교부한다.
6. 실수요자가 MARK-UP 및 기타경비를 미불시에는 통관을 중지시켜 육가공협회가 임의로 처분(공매처분 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은행명 :
주소 :
대표자성명 :

(인)

SBS용 수입쇠고기 수불일지

* 특이사항 (비고)

--

결 재	담당	과장	사장	점	검

단위 : 개, kg

일자	통관 일자	계 약 번 호	입 고		출 고		재 고	
			BOX수	중 량	BOX수	중 량	BOX수	중 량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	/	KMIA-96 -						
합		계						

SBS 수입쇠고기 생산 및 제품 출고 일(월)지

(199 . . .)

결 계	결	사	점
	담당	장	점

1. 원료와 입출고 및 생산 현황

구분	전 일 (월) 재고 현황			입고	출고			원료 투입			재고	비고	
	타	창고	자사창고		금	원(월)	수	계	계	비고			
부위	수량 C/T	중량 kg	수량 C/T	중량 kg	수량 C/T	중량 kg	수량 C/T	중량 kg	수량 C/T	중량 kg	수량 C/T	중량 kg	
합계													

2. 제품생산 및 출고 현황

구분	비고	전 일 (월) 재고		금 일 (월) 생산		수율 %	금 일 (월) 출고		비고
		수량 PCS	중량 kg	수량 PCS	중량 kg		수량 PCS	중량 kg	
제품명									
합계									

* 특기 사항 (판매처 등)

- 1.
- 2.
- 3.
- 4.
- 5.
- 6.
- 7.
- 8.